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박찬대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6697호)

2026. 3.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관계부처 의견	3
IV. 검토의견	5
1. 예산 편성 시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반영(안 제14조제6항) ..	5
2. 국제개발협력 평가 전문기관 지정(안 제16조제7항 신설 등)	13
3. 부칙	24
※ 참고자료	25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찬대의원 등 10인
2. 제안일자 : 2026년 2월 10일
3. 회부일자 : 2025년 2월 11일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시행계획 이행의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차년도 예산 편성 시 해당 계획을 존중하도록 하는 한편,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및 시행기관이 각각 해당 사업을 매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예산 편성 시 종합시행계획 반영 여부가 기획예산처장관 재량으로 되어 있어, 종합시행계획 내용을 예산에 반영하여 국제개발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 평가는 시행기관의 자체평가에 대한 종합적인 상위평가로서 그 전문성 및 객관성이 중요하므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사업 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전문평가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획예산처장관이 차년도 예산 편성 시 종합시행계획을 반영

하도록 하는 한편,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평가 지원을 위한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의 안정적 재정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국제개발협력 사업 평가의 전문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6항, 제16조제7항 신설 등).

Ⅲ. 관계부처 의견

1. 국무조정실

개정안 제16조 관련, 최근 발표(2.26)한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최상위 전략인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의 중점과제에 포함된 만큼, 평가 전문기관 지정 및 예산 지원 근거는 필수적임.

평가 전문기관을 통해 국제개발협력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보다 확보하면서도 안정적인 평가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다소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고 행·재정적 비용을 절감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특히 평가의 핵심인 독립성·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 지원 방식은 출연으로 한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외교부

개정안 제16조는 개별사업 평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별도의 평가전문기관 지정을 제안하고 있으나, 예산 출연이 수반되는 기관을 법률로 설치·운영할 경우 현재 운영 중인 국제개발협력 평가전문위원회의 기능이 약화되고, 양 기관 간 업무 중복 및 예산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또한 국내 연구기관의 ODA 전문인력이 10~20여 명 규모에 불과한 현실을 고려할 때, 연간 약 1,600여 건에 달하는 해외 개별사업을 전담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영국·독일의 평가기구 역시 개별사업이 아닌 전략·특정 주제 중심의 평가를 수행하고, 구체적 평가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추진하고 있음.

따라서 별도 전문기관을 신설하기보다는, 현행 시행령에 따른 평가전문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필요시 연구용역·컨설팅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문성을 보완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기획예산처

개정안 제14조는 재정당국의 예산 편성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사실상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편성 권한을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개정안 수용이 곤란함.

예산 편성은 재정 여건, 정책 우선순위, 재정사업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재정 전체 차원에서 결정이 필요한 사안임. 또한, 현재도 기획예산처는 ODA 예산 편성시 종합시행계획을 최대한 존중하여 예산에 반영하려고 노력 중임.

IV. 검토의견

1. 예산 편성 시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반영(안 제14조제6항)

현행법은 기획예산처장관이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시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이하 “종합시행계획”)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반영’하도록 의무화하여 예산 편성 과정에서 종합시행계획의 실질적 구속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4조(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위원회는 종합기본계획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추진전략과 사업계획 등이 포함된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이하 “종합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심사·의결하여 확정한다. ② 시행기관은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을 종합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기관은 전략회의가 심의·조정한 주요 사항을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행기관이 제출한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이 종합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국제개발협력을 종합	제14조(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적·체계적·전략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기관은 전략회의가 심의·조정한 주요 사항을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에 반영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④ 주관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을 종합·검토하여 각각 소관 분야의 연간 국제개발협력 추진전략이 포함된 시행계획안(이하 "분야별 시행계획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분야별 시행계획안을 조정 및 심사하여 종합시행계획을 의결한다. ⑥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5항에 따라 의결된 종합시행계획을 <u>준중</u>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7항 전단에 따라 확정된 종합시행계획을 조정 및 심사·의결을 거쳐 수정할 수 있다. ⑨ 위원회는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종합시행계획을 확정 또는 수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 ----- -----<u>반영</u>----- -----. ⑦ ~ ⑩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종합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절차 및 국회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합시행계획은 여러 단계의 심의·조정과 협의를 거쳐 1년 단위로 작성되며, 공적개발원조(이하 “ODA”라 함) 사업 간 우선순위와 전략적 방향이 반영되어 있음. 종합시행계획의 세부 수립 절차는 다음과 같음.

< 종합시행계획 세부 수립 절차 >

시기	주체	내용	관련 조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25. 2월	주관기관 ¹⁾ (외교부, 재경부)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수립지침 안내	-
'25. 3월	시행기관 ²⁾ (관계부처 및 지자체)	수립지침에 따라 기관별 시행계획을 주관 기관에 제출	제14조제2항
'25. 6월	주관기관	분야별 종합시행계획안을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제출	제14조제4항
'25. 6월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26년도 종합시행계획(요구액 기준) 의결	제14조제5항
'25. 9월	기획예산처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국회 제출	제14조제6항
'25. 12월	국회	2026년도 예산 국회 의결	-
'26. 2월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26년도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의결	제14조제7항

자료: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 개발협력총괄과(2026.2.25.), 국회법률정보시스템

- 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관기관”이란 제12조에 따라 소관 분야의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 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시행기관”이란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사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

현행법은 이와 같은 종합시행계획의 성격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종합시행계획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음. 동 규정은 2020년 5월 26일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전부개정되며 신설되었음.

그런데 ODA 예산의 편성 현황을 보면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의결한 요구액과 기획예산처(舊 기획재정부)가 편성한 정부예산안 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예를 들어, 외교부의 2026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인도적 지원(ODA) 사업의 내역사업인 ‘해외긴급구호’ 사업은 종합시행계획에는 5,570억 2,800만원이 담겼으나,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3,253억 1,600만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음.

< 종합시행계획 상 예산과 기획예산처 편성 예산 간 차이가 100억원 이상 발생한 사업 현황(외교부, 2026년도 예산안) >

(단위: 백만원)

연 번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종합시행계획 (요구액) 예산	기재부 편성 예산
1	인도적 지원(ODA)	해외긴급구호	557,028	325,316
2	협력사업 지원(ODA)	협력사업지원	137,314	166,070
3	민관협력사업(ODA)	주제별 프로그램	64,688	47,118
4	아시아태평양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분쟁 및 취약국(아시아태평양)	23,392	12,292
5	아프리카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분쟁 및 취약국(아프리카)	63,607	33,607

자료: 외교부 개발협력국 개발전략·민간협력과(2026.2.27.)

또한, 2025년도 기획재정부 예산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캄보디아 민간 협력전대차관’ 사업 등은 종합시행계획에는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예산이 편성되었음.

**< 종합시행계획 상 예산과 기획예산처 편성 예산 간
차이가 발생한 사업 현황(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안) >**

(단위: 백만원)

연 번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종합시행계획 (요구액) 예산	기재부 편성 예산
1	민간·국제기구협력	캄보디아 민간협력전대차관	-	64,850
2	민간·국제기구협력	캄보디아 무역경쟁력 강화 프로그램(Sub-Program 2)	-	33,675
3	민간·국제기구협력	탄자니아 도도마 지속가능한 통합 교통사업(EDCF-WB 협조융자 사업)	-	50,513
4	기후행동강화 지원(ODA)	손실과 피해 대응 기금	-	3,140

자료: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 사업연계조정과(2026.2.25.)

종합시행계획 상의 예산과 예산 당국이 편성한 예산에 차이가 크게 발생할 경우, 종합시행계획의 실효성이 저하되어 위원회의 조정 기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음. 특히 2025년도 예산과 같이 종합시행계획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예산이 편성될 경우 해당 사업의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아 ODA 예산 편성의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도 있는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예산의 편성은 기획예산처의 권한으로³⁾, 기획예산처는 ODA 사

3) 「정부조직법」 제23조(기획예산처) ①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재정정책의 수립,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예산처를 둔다.

업 뿐 아니라 국가 전체 예산의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함. 이 과정에서 종합시행계획 수립 시 고려하지 못하는 거시경제적 변수와 재정적인 제약 요건 등을 감안하게 되는데, 개정안과 같이 종합시행계획의 기속력을 강화할 경우 이러한 예산 당국의 전략적인 예산 배분 기능이 약화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유사 입법례로,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현행법과 같이 기획예산처 장관이 외교부장관이 송부한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한편, 「과학기술기본법」은 개정안과 유사하게 기획예산처 장관이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면서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게 하였음.

< 유사 입법례 >

분야 (소관)	관련 조문	비고
국제기구 분담금 (외교부)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실적에 대한 자체평가 등)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소관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실적,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u>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납부실적 등에 대한 심의·조정 결과를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송부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송부받은 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존중하여 다음 연도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u>	’21.1.5. 법 제정 시부터 동 규정 포함

분야 (소관)	관련 조문	비고
국가연구 개발 (R&D) 사업 (과학기술 정보 통신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등) ⑤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 및 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와 연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알려야 한다.</u>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사업별 투자우선순위 3. <u>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방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내역</u> 3의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하는 <u>예산의 배분·조정 내역</u> 4.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의 조정 및 연계 ⑨ <u>기획예산처장관은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항에 따른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u>	'01.1.16. 법 제정, '10.12.27. 동 규정 신설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행정 안전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2(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등) ③ <u>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기사업계획서, 투자우선순위 의견 및 예산요구서를 검토하고,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	'04.3.11. 법 제정, '14.12.30. 동 규정 신설

분야 (소관)	관련 조문	비고
	1.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 방향 2.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투자적정성, 중점 추진방향 등에 관한 사항 3.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유사성·중복성 검토결과 4.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u>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상황과 재정운용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토대로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관한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u>	

자료 : 국회법률정보시스템

2. 국제개발협력 평가 전문기관 지정(안 제16조제7항 신설 등)

현행법은 위원회가 국제개발협력 정책 및 사업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평가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관의 평가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6조(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①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성과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국제개발협력 사업 시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 및 사업을 평가한다. ② 시행기관은 제1항의 평가지침에 따라 매년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이에 따른 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평가지침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 등에 대해서는 평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시행기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를 평가할 때 외부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정책 및 사업에 대한 평가 결	제16조(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① ~ ⑥ (현행과 같음)

(1) 국제개발협력 평가 현황

국제개발협력 정책 및 사업에 대한 평가는 ① 위원회 평가와 ② 자체 평가로 나뉜.

① ‘위원회 평가’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13조4)에 따라 설치된 평가전문위원회(이하 “평가전문위원회”)가 정책·전략·국별·분야별 등 대표성 있는 정책·사업 등을 선정하여 종합적 평가를 실시하는 것임.

평가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간사를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국무조정실 개발협력본부장이 위원장이 됨.

< 국제개발협력 평가전문위원회의 구성 >

구 분	구 성
위원장(1)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장
당연직(5)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지원국장(간사)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장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한국수출입은행 경험본부장 한국국제협력단 이사
위촉직(10) * 임기 2년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실무위원장이 위촉

자료: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 개발협력기획국(2026.3.4.)

4)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13조(국제개발협력 평가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국제개발협력 평가전문위원회(이하 “평가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평가전문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경비 지급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 평가의 세부적인 절차를 살펴보면, 평가전문위원회가 연 3건의 평가과제⁵⁾를 확정하면, 국무조정실에서 해당 과제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연구용역을 발주⁶⁾하여 선정된 기관이 연중 연구를 수행함.

이후, 해당 연구용역 결과물을 바탕으로 평가전문위원회가 평가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차년도 2월 평가전문위원회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본위원회에서 이를 상정·의결하게 됨.

< 위원회 평가 절차 >

- **(평가계획 수립)** 국무조정실에서 당해 ODA 중점 방향에 부합하는 평가계획안 초안 마련 → 평가전문위원 간담회를 통해 의견수렴 → 국무조정실, 계획안 보완 → 평가전문위원회 및 본위원회 상정
 - * 분야별, 주제별 대표성 있는 정책·사업 등을 선정하여 연 3건의 평가과제 확정
- **(과제별 평가 수행)** 국무조정실, 실질적인 평가 수행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3월) → 연구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4월) → 연구 수행 및 완료(4월~11월) →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보고서 초안 작성(~12월)
 - **(평가전문위원회)**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중간보고회·최종보고회 참석 및 연구용역 결과물 검토(~11월) → 평가전문위원회 간담회 시 평가보고서 초안 검토(차년도 1월)
- **(평가결과 보고)** 국무조정실, 평가 결과보고서 보완(차년도 1월) → 평가결과 평가전문위원회 및 본위원회 상정·의결(차년도 2월)

자료: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 개발협력기획국(2026.3.4.)

5) 최근 위원회평가 과제 목록

'23년	국별 종합진단(캄보디아, 인도네시아), 2023년 기관역량진단, 기후변화대응 ODA 사업평가
'24년	국별 종합진단(탄자니아, 우즈베키스탄, 콜롬비아), ODA 연수사업 평가 2024년 기관역량진단 + 기관역량진단 예외기관의 자체점검 결과
'25년	국별 종합진단(베트남, 방글라데시, 우간다), 2025년 기관역량진단, 통합 성과관리 체계 수립 계획
'26년	2026년 기관역량진단, 다지역 유사 ODA 사업 평가, 유·무상간 연계사업 평가

6) 2026년도 소요 예산은 3억 7,000만원임.

한편, ② ‘자체 평가’는 ODA 사업을 실제 실시하는 부·처·청 등 42개 시행기관이 소관 ODA 사업 중 평가 대상 과제를 선정하여, 평가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대상 과제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함.

국무조정실은 연도별 자체평가 계획 수립, 추진상황 점검, 평가 결과 후속 조치 등 시행기관의 자체평가 전반에 대한 총괄을 맡고 있음.

그러나 2026년도 예산 기준 우리나라 전체 ODA 규모가 5조원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ODA에 대한 평가가 종합적이지 못하고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⁷⁾⁸⁾.

현재 20인 내외로 구성되는 평가전문위원회로 내실 있는 평가를 실시하는 데에는 물리적 한계가 따를 것으로 보이는데, 연 3회 정도의 회의 및 회의를 위한 간담회만으로는 다수의 ODA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층적인 평가를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실제 평가 과정에서는 외부 위탁기관이 작성한 보고서에 상당 부분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평가가 이루어지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

또한, 평가전문위원회에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장,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한국수출입은행 경협본부장, 한국국제협력단 이사’ 등 ODA 사

7) 박영준·서덕수, 「공적개발원조(ODA)의 원조효과성 향상을 위한 평가체계 고도화 연구」, 전경련 국제경영원·한동대학교(UNAI Korea), 2021, p.70.

8) · 이강일의원(25년 국정감사, 26년 정무위 업무설명) : 평가 일관성, 객관성 등을 위해 ODA 평가전문기관 지정 운영

· 국회입법조사처(2025.10.): ODA 정책의 전문적 통합적인 평가를 위해 독립 평가기관 설립 검토

업을 주관하고 시행하는 기관의 책임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평가의 전문성, 객관성과 독립성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2) 검토의견

1) 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필요성에 관한 사항

개정안은 평가전문위원회의 평가 외에 ODA 평가 전문기관에 의한 평가가 없는 점을 개선하여 평가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려는 것으로, 현재 평가제도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현재는 3건의 위원회 평가만 실시 중이나, 양적으로도 수행하는 과제의 수가 확대될 수 있으며 당면 현안에 대하여 수시로 평가를 수행하기에 용이할 것으로 보임.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ODA 정책에 대한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평가를 위한 기관으로 영국의 ‘원조 영향 평가를 위한 독립위원회(ICAI)’⁹⁾, 독일의 ‘개발평가연구소(DEVal)’¹⁰⁾와 같은 전문 평가조직이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독립된 평가 조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음.¹¹⁾

9) 영국 ICAI는 사무국의 상설 인력은 10여명이나, 연간 약 223만파운드(38억원)의 예산으로 주로 외부 컨설팅 조직을 활용하여 평가를 수행함.(ICAI 홈페이지(<https://icai.independent.gov.uk/html-version/annual-report-2024-2025/#section-2>))

10) 독일 DEVal은 100여명의 인력으로 운용되며, 연간 약 1,465만유로(220억원)의 예산으로 운용됨.(Kurzfassung(des Jahresabschlusses und des Lageberichtes zum), DEVal, 2024.12.31.)

11) 공적개발원조(ODA) 추진체계 개선을 위한 과제 및 국회의 역할,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논점(제2418호, 2025. 10. 22.), 박명희, p. 4.

한편, 위원회의 평가가 외부 위탁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매년 입찰 절차를 반복함에 따라 행정적 비용이 발생하고, 수행 주체의 변경으로 데이터와 평가 노하우의 지속적인 축적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최근 3년간 위원회 평가 용역 수행 기관을 살펴보면, ‘기관역량진단’ 평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3년 연속 수행하였으나, 국별종합진단 등 다른 용역은 대학 부설 연구소 및 한국행정연구원 등이 1년 단위로 수행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3년간 위원회 평가 용역 수행 기관 현황 >

연도	용역명	수행기관	예산 (백만원)
2023	국별종합진단 (캄보디아·인도네시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
	2023년 기관역량진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50
	기후변화대응 ODA 사업평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00
2024	국별종합진단 (탄자니아·우즈베키스탄·콜롬비아)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250
	2024년 기관역량진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00
	ODA 연수사업 평가	한국행정연구원	70
2025	통합성과관리 체계 수립 연구	(공동 수행) 서울대 산학협력단 연세대 산학협력단	165
	국별종합진단 (베트남·방글라데시·우간다)	연세대학교 아프리카연구원	150
	2025년 기관역량진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50

자료: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 개발협력기획국(2026.3.4.)

따라서 평가 전문기관이 지정될 경우 현재 연구용역 방식으로 수행되는 평가를 해당 기관이 수행하게 됨에 따라 용역 발주 및 계약 등 관련 행정 절차가 일부 간소화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아울러 평가 수행 주체가 안정적으로 확보될 경우 평가 자료와 노하우의 축적이 가능해져 평가의 전문성과 지속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평가 전문기관 운영 시 위원회 평가 예상 절차 >

현행	개정																							
(평가전문위원회) 평가계획 의결 ↓ (연구용역진) 평가 수행	(평가전문위원회) 평가계획 의결 ↓ (평가전문기관) 평가 수행																							
<table><tr><th>A 평가</th><th>B평가</th><th>C평가</th></tr><tr><td>공고</td><td>공고</td><td>공고</td></tr><tr><td>입찰</td><td>입찰</td><td>입찰</td></tr><tr><td>기관선정</td><td>기관선정</td><td>기관선정</td></tr><tr><td>계약</td><td>계약</td><td>계약</td></tr><tr><td>용역실시</td><td>용역실시</td><td>용역실시</td></tr><tr><td>정산</td><td>정산</td><td>정산</td></tr></table>	A 평가	B평가	C평가	공고	공고	공고	입찰	입찰	입찰	기관선정	기관선정	기관선정	계약	계약	계약	용역실시	용역실시	용역실시	정산	정산	정산	<table><tr><th>A·B·C 평가</th></tr><tr><td>연구 실시</td></tr></table>	A·B·C 평가	연구 실시
A 평가	B평가	C평가																						
공고	공고	공고																						
입찰	입찰	입찰																						
기관선정	기관선정	기관선정																						
계약	계약	계약																						
용역실시	용역실시	용역실시																						
정산	정산	정산																						
A·B·C 평가																								
연구 실시																								
↓ (평가전문위원회) 평가결과 의결	↓ (평가전문위원회) 평가결과 의결																							

자료: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 개발협력기획국(2026.3.4.)

다만, 개별 ODA 사업을 직접 실시하는 시행기관의 평가인 ‘자체평가’의 질적 개선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즉, 개정안처럼 평가 전문기관을 지정하더라도,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개별 사업평가의 질적 개선을 통한 신뢰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평가의 내실화를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 독립기구인 Independent Commission for Aid Impact(ICAI)가 상위 수준에서 ODA 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시행기관인 영국의 외무·영연방·개발부(FCDO)가 작성한 각

종 평가 문서가 중요한 증거원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음. 이러한 사례는 시행기관의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체계가 일정 수준 구축되어 기초자료가 축적될 때 독립적인 상위평가도 보다 실효적으로 수행될 수 있음을 시사함.

이와 관련하여,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에서 정부는 성과관리와 평가 등 사업 전반의 관리·감독 책임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도록 책무성을 강화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남.

2) 평가 전문기관 지정 기준 및 지정 취소

한편만, 개정안과 같이 ‘지정’이 실질적으로 행정청의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하는 성격일 경우, 지정기준, 지정절차, 지정취소 및 해당 업무의 범위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임.¹²⁾

개정안은 지정의 근거와 예산 지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전문평가기관의 지정기준이나 구체적인 역할 범위를 알 수 없음. 또한 성과가 미흡하거나 운영이 부실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전문평가기관에 대한 제재가 어려울 수 있음.

따라서 지정기준이나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입법례는 ① 지정할 수 있다는 근거만 두는 경우, ② 지정과 예산 지원을 함께 규정하는 경우, ③ 지정기준

12)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p.350

및 역할 등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는 경우, ④ 지정 취소나 해제에 대해서도 규정하는 경우 등 다양함.¹³⁾

3) 평가 전문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 방식에 관한 사항

개정안은 전문평가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 방식을 ‘출연’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재정 여건 및 예산 편성의 유연성을 고려하여 보조 방식도 병행 가능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국무조정실은 전문기관의 독립성과 안정적인 운영을 담보하고,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조보다는 출연의 방식이 적절하다는 의견임.

그러나 전문성과 안정성 확보는 전문평가기관의 지정 요건을 강화하거나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에서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통해서도 담보할 수 있는바, 예산 지원 방식을 출연으로 특정하기 보다는 다양한 재정 지원 방식의 활용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제도 운영의 탄력성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지정기관의 요건 및 예산 지원 관련 입법례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전략기술 및 인력의 육성·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 설립·운영하는 연구소를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이하 "특화연구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13) [참고자료] 지정 관련 입법례

2.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4.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5. 그 밖에 특화연구소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화연구소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2조(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뿌리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u>을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 그 밖에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진흥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u>출연 또는 보조</u>할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3(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위임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조의2에 따라 대기오염도를 과학적으로 예측·발표하고 대기질 통합관리 및 대기환경개선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이하 이 조에서 "통합관리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으며, <u>국공립 연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u>을 통합관리센터로 지정·위임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통합관리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u>지원</u>하여야 한다.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

한편, 일반적으로 지정 주체와 예산 지원 주체는 동일하게 규정되는 경우가 많으나, 개정안의 지정 주체인 국가개발협력위원회는 심의·의결기구로서 직접적인 예산 지원 권한을 갖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예산 지원의 주체를 ‘국가’로 규정한 것으로 보임.

3. 부칙

개정안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규정하며(부칙 제1조), 안 제1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는 적용례를 두고 있음(부칙 제2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시행계획의 예산 반영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안 제14조제9항이 평가 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하위법령의 정비를 위한 시간이 소요됨을 고려할 때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다만, 적용례와 관련하여 개정안이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는 시점과 근접한 날에 시행될 경우, 이미 상당 부분 확정된 예산안에 종합시행계획을 반영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

따라서 적용례를 ‘제1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위원회가 의결한 종합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등으로 하여 예산이 안정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지정 관련 입법례

법률	비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조(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생명윤리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 연구 및 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을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① 지정 근거만 마련
「디지털포용법」 제15조(디지털역량센터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주민의 디지털역량 함양과 정보격차의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역량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디지털역량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정 및 예산 지원 규정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지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정책의 지속적인 발전과 안전한 보행환경의 조성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행 활성화 시책의 발굴 및 지원 2. 보행 관련 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3. 보행환경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4.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 지원 5. 보행환경개선사업 등 보행 관련 공공사업의 계획·시행 및 평가 지원 6. 보행안전지수의 개발·조사 및 산정 지원 7.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지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정 기준 및 업무 규정

법률	비고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4조(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스포츠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행한다. 1. 스포츠산업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2. 스포츠산업체 발전을 위한 상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원센터가 제2항의 기능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지정 및 해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정 해제 까지 규정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

문 의 처
02) 6788-5264